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마곡15누리 · 드림 · 노블키즈 · 스마일 · 푸른별]

의안 번호	2020-22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일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마곡15누리 · 드림 · 노블키즈 · 스마일 · 푸른별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재위탁 심의를 실시하여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및 부칙 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일반현황

어린이집명	행정동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연면적(㎡)	층수	
구립 마곡15누리어린이집	발산1동	마곡중앙로 36	571	1층	82명
구립 드림어린이집	발산1동	수명로2길 50	293	1층	49명
구립 노블키즈어린이집	발산1동	강서로47길 108 109동 102호(수명산파크 1단지)	90	1층	20명
구립 스마일어린이집	우장산동	강서로 266 114동 103호 (아이파크e편한세상)	88	1층	20명
구립 푸른별어린이집	발산1동	강서로47길 158 201동 104호 (마곡수명산파크)	94	1층	20명

○ 위탁운영체 현황

어린이집명	위탁체	원장	재위탁 기간
마곡15누리 어린이집	대한예수교장로회늘빛교회	권혜은	2020.11.1.~2024.10.31.
드림 어린이집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오영희	2021.1.1.~2025.12.31.
노블키즈 어린이집	송선희(개인)	송선희	2021.1.1.~2025.12.31.
스마일 어린이집	박수정(개인)	박수정	2021.1.1.~2025.12.31.
푸른별 어린이집	정미경(개인)	정미경	2021.1.1.~2025.12.31.

나. 필요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 구립어린이집은 아동의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음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9조(위탁기간)
- 재위탁체 선정 :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 마곡15누리 어린이집 : 2020. 11. 1. ~ 2024. 10. 31.(4년 예정)
 - ※ 공동주택 무상임대 협약서 기간에 따름
 - 드림·노블키즈·스마일·푸른별 어린이집 : 2021. 1. 1. ~ 2025. 12. 31.(5년)
- 위탁사무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어린이집명	합 계	인건비	운영비
구립 마곡15누리 어린이집	209,636	205,508	4,128
구립 드림어린이집	225,232	221,392	3,840
구립 노블키즈 어린이집	109,140	106,440	2,700
구립 스마일 어린이집	107,845	105,145	2,700
구립 푸른별 어린이집	150,637	147,637	3,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9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